

19세기 역지통신과 조선

이와까따 히사히코(岩方久彦)

1. 머리말

90년대까지 통신사 연구가 상당히 부진했던 한국학회에서 2000년대에 들어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2002년에 공동연구를 시작한 1차 한일공동역사위원회의 보고서가 2005년에 공개되었다. 통신사도 주제로 선정되며 6명의 연구자가 집필했다.¹ 이것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통신사 연구일 것이다. 그리고 통신사에 관한 관심은 2차 한일공동역사위원회의 2010년 보고서에도 유지되었다.² 다만 최근의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 역사학의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역사학 입장에서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지금까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19세기 역지통신을 조선 입장에서 살피려고 한다. 물론 조선시대 전 시기를 통해 交隣政策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교린에 대한 양국 위정자들의 인식은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교린에 대한 시급한 과제가 있던 임진왜란 직후와 19세기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보다 세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변화의 양상을 추적해, 통신사 연구를 한 단계 높이 끌어올리는 시기가 온 것이다. 19세기 통신사는 1811년 대마도 역지통신, 그리고 오사카 역지통신의 추진과 좌절, 다시 대마도 역지통신을 추진하는 3기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대마도 역지통신과 오사카 역지통신까지를 검토 대상으로 하며, 3기 역지통신

¹ 제목은 아래와 같다.

조광, 「통신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성과와 쟁점사항」, 장순순, 「朝鮮時代 通信使 研究의 現況 과 課題」, 이철성, 「통신사와 연행사의 비교연구」, 韓泰文, 「通信使 往來를 통한 文化交流」, 洪性德, 「朝鮮後期 對日外交使行과 倭學譯官」, 현명철, 「통신사 단절과 서계문제」(한일관계사 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한일관계사 연구논집 6,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2005, 京仁文化社)

² 장순순, 「조선후기 通信使行의 인적 구성과 對日外交의 특질」, 김태훈, 「17~18세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2편이 수록되었다. (한일관계사 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한일관계사 연구논집 14, 『중·근세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2010, 京仁文化社.

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문을 준비할 예정이다.

2. 1811年 역지통신과 교린관계

(1) 통신사 연기교섭(1788년~1789년)

대마도 역지통신 교섭은 2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렸고, 교섭도 복잡했다. 그래서 필자는 시기를 편의상 3기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1기는 1788년 대마도가 연기교섭을 시작하며 1789년 조선이 수용할 때까지. 2기는 1791년 역지통신 교섭 시작부터 1795년까지. 3기는 1798년 무오약조부터 1809년 역지통신 타결까지로 하겠다.

1788년 막부는 흥년 등의 이유로 통신사 파견을 연기해달라고 조선에 요청했다.³ 통신사 파견 요청을 기다리던 조선은 몹시 당황했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즉시 거절했다. 실은 조선은 일본의 요청이 있기 전부터 동래부사의 보고를 통해 쇼군의 서거를 알고 있었고, 교린의 도에 따라 이미 인삼 200근을 준비 중이었다.⁴

조선이 일본의 연기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약조로 정한 차왜가 아니라는 점이였다. 차왜는 약조로 정한 무역선 이외에 급히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 파견되는데 제한이 없었다. 그래서 대마도는 조금이라도 많은 무역을 하려고 여러 이름으로 차왜를 보냈다. 한번 접대를 한번 허락하면 전례가 되기때문에 약조에 없는 차왜에 대해서는 조선입장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차왜는 왜관 약조로 정해진 기간을 지나는데도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래부사 김이희는 차왜의 처벌을 요구했고, 동래부사의 상계와 차왜의 서계를 심사한 비변사도 ‘이웃 나라와 사귀는 도리는 약조를 지키는 것인데, 이미 연례로 사신을 보내는데도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약조에 위반하는

³ 『通信使草牒錄』, 정조 기유 3월 7일.

⁴ 『정조실록』 22권 10년 10월 신해조.

일'이라면서 책망하여 귀국시키도록 계언했다. 그러나 정조는 '이번 차왜는 조약위반이 아니라 통신사를 요청하는 기한이 되는데 그들의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기한을 물려줄 것을 청했으니 특별히 입국을 하라하고 접대할 것'을 명했다.⁵ 정조의 접대 허락은 일본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었다. 결국 차왜는 종래의 大差倭와 같은 접대를 받고 통신사 연기교섭은 끝났다.

(2) 역지통신 교섭(1791년~1795년)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은 다시 통신사 파송을 대비해 예단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1790년 3월 부사직 강유는 '통신사가 머지않아 출발을 해야하는데, 필요한 인삼이 2백 60근이나 되지만 기영과 강계에서도 삼을 살수가 없다'는 상서를 했다⁶. 이것은 당시 산삼 찾기가 어려워져 고심하는 조선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약조로 정한 산삼을 확보하지 못하면 통신사 파송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선례를 중시하는 조선입장에서 산삼문제는 풀기 어려운 과제였다.

한편 대마도는 차왜를 보내기 전 頭倭 한 명을 보냈다. 이것은 본 교섭을 하기 위한 예비교섭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1791년 11월 24일 동래부사 유강은 '법규에 없고 이미 연기가 결정된 통신사에 대해 차왜를 보내려는 것은 대마도의 교활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대차왜를 거부할 것을 치계했다. 좌의정 채제공을 비롯해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다.⁷ 조정에서 이러한 결정이 나온 후, 즉 1791년 12월 議定大差倭는 부산에 도착하며 전례에 다른 접대를 청구했다. 서계에는 '해가 갈수록 흉년이 거듭하고 다시 연기를 청한다면 양국이 隣交하는 본 뜻을 깨뜨릴까 두렵다. 빙례를 대마도에서 간소하게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⁸

접대 거절은 결정되고 있었지만, 서계를 받고도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 동래부사 유강은 '통신사가 예도에서 국서를 교환하는 것은 양국간에 중대한 일임으로 경비절감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상계했다. 또 좌의정

⁵ 『정조실록』 27권 13년 2월 신축조.

⁶ 『정조실록』 29권 14년 3월 경인조.

⁷ 『정조실록』 33권 15년 11월 을미조.

⁸ 『通信使草騰錄』, 정조 辛亥 12월 21일.

채제공도 '議聘大差倭는 전례에 없는 것임으로 일본의 교활함을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며, 차왜를 귀국시킴을 계언했다.⁹ 조선이 서계 내용에 관계 없이 형식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대마도는 도주의 책임문제까지 거론하면서 4년간 교섭을 했으나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해 일본에 귀국했다.

조선이 대마도 빙례를 거부한 이유는 먼저 역지통신에 대한 논의가 조선에서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조선이 내세운 논리를 정리한다면 첫째 차왜가 약조위반이라는 점. 둘째 국서교환은 반드시 에도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에도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가. 하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또는 명분론적인 입장, 또 하나는 통신사의 일본 내 사정탐색이었다. 그런데 대마도에서 빙례를 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3) 역지통신 재교섭(1796년~1809년)

조선이 거부함에 따라 역지통신은 무상됐다. 그러나 반드시 교섭을 성사시킬 수밖에 없는 대마도는 1796년 도해역관으로 방문한 당상역관 박준한에게 銅鐵 2천근의 수표와 각종 물품을 주면서 조정을 설득하도록 부탁을 했다. 박준한은 통신사를 당분간 연기할 것, 인삼을 대폭 줄일 것 등을 제안했다. 그가 일본에서 귀국한 후 1797년 2월의 『日省錄』 기사를 보면 역지통신 절대 불가부터 허락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결국 역지통신이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하고 박준한에게는 연기교섭만 허락했다.

1798년 대마도와 왜학 역관을 중심으로 통신사를 10년 연기하는 등의 무오약조가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동래부사 뿐만 아니라 조정도 전혀 모르는 위조된 약조이었다. 조선은 1805년 안핵사의 밀계를 통해서 역관들의 부정행위가 폭로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막부는 1805년 10월 역지통신을 1809년도에 실시하고 싶다는 '通信使請來差倭'를 보냈다. 그러나 조선은 이

⁹ 『通信使草臚錄』, 정조 辛亥 12월 21일, 동 12월 25일.

¹⁰ 『日省錄』 24 정조 21년 2월 신미조.

약조는 위조된 것이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뀌지 않았다. 막부와 조선 사이에서 고립된 대마도는 약조로 금지된 난출도 시도하며 계속적으로 조선을 압박했다. 결국 이러한 교섭 과정을 통해 조선이 문제시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1809년 역지통신 교섭이 18년 만에 타결됐고, 1811년도에 시행되었다. 역지통신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다.

3. 오사카 역지통신 계획과 좌절

(1) 대마도 역지통신 교섭과 ‘遷延策’

막부는 1840년 12월에 새 쇼군에 대한 통신사 빙례 시기를 1844년 봄으로 정했다. 1841년 5월에 通信使請來差倭는 부산에 도착하여 대마도 역지통신 교섭에 돌입했다. 대마도가 가지고 온 서계에는 “새 쇼군이 즉위를 했으니 선례에 따라 통신사 빙례를 甲辰年(1844년) 봄 대마도에서 시행하고 싶다”고 나와 있었다.¹¹ 1811년의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마도가 역지통신 교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관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왜냐하면 당시는 대마도가 서계를 갖고 오면 왜학 양역(훈도, 별차), 동래부, 경상감사를 거쳐 중앙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반대로 조선의 결정이나 회답문서도 동래부를 거쳐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대일외교는 역관이 왜관측 문서를 전달하는 것으로써, 역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또 대마도는 동래부사를 통한 공식적인 경로 이외에도 역관을 경유한 비공식적인 경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역관들은 맡은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비변사, 승정원, 예조 등 대일교섭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서리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했다. 대마도는 서리 층을 고관들의 측근으로

¹¹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MF0000170 『信使前集書』四<御國控>
天保13년 1월 7일~13년 11월 회일.

인식하고, 고관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얼마나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지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¹²

역관들의 도움을 원했던 대마도이지만, 예상과는 달리 왜학 훈도 玄學魯의 강력한 반대로 교섭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는 약조로 정한 1811년 역지통신을 한시적인 것이었다고 부정하며 통신사의 파송 시기는 조선이 결정한다 것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東萊府使에게 전달하고, 동래부사도 현학노의 주장을 수용했다. 서계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조선과 상의 없이 대마도 병례와 시행 시기를 막부가 일반적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물론 서계를 갖고 온 대마도는 역지통신은 이미 기사년(1809년) 약조로 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은 약조로 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10년 이상 대마도가 간청해서 할 수 없이 허락한 것이고 200년간의 통신사 관련 약조에 어긋난 일이라고 반박했다.¹³ 이것을 통해 대마도 역지통신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가 큰 것과, 조선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조선은 통신사를 원래대로 먼저 복구하고 나서 통신사의 파송 시기를 의논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바로 통신사의 시기를 논하는 것은 誠信交隣의 情誼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이 서계를 환송하여 고쳐오도록 해야 한다고 동래부사는 보고했고 헌종도 허락했다.¹⁴

조정의 방침은 동래부사 傳令의 형식으로 왜관 관수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대마도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고, 왜관관수는 傳令謄本을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학노는 급히 문제 수습에 나섰다. 대마도는 7월 1일 조선이 역지통신을 수용한 講定書를 보여주면서 약조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조선은 이를 인정하며 교섭을 다시 시작해 12대 쇼군 경하의 통신사는 1811년과

¹² 이훈, 「18세기 중엽 일본 표선에 대한 ‘雜物’ 지급과 조일 교섭경로 왜곡」,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2000, 344~345쪽.

¹³ 田保橋潔, 「朝鮮國通信使易地行聘考下の2」, 『東洋學報』 24-3, 1937, 335~336쪽.

¹⁴ 『비변사등록』 제 229책 헌종 7년 신축 6월 10일.

같은 형식으로 2 년 연기한 1846 년에 실시하게 되었다.¹⁵ 한편 역지 반대를 주장한 현학노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대마도 역지통신 반대여론을 주도한 현학노는 차왜를 적절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문책으로 原州牧으로 定配를 당했다.¹⁶

그러나 조선이 그렇게도 문제시한 파송 시기를 2 년 遷延시키는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면 시기는 조선이 주체적으로 정한다는 현학노의 주장은 그대로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遷延이라는 방법으로 조선은 파송 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었다. ‘遷延策’을 통한 파송 시기의 조율문제는 오사카 역지통신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19 세기 통신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연기의 연속이었던 통신사 교섭에서 다른 문제는 깊이 논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시기는 반드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¹⁷ 이것은 통신사 외교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마도가 조선에서 어려운 교섭을 하고 있었을 때 막부 내부에는 변화가 있었다. 쇼군을 물러난 후에도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던 이에나리(家齊)가 1841 년 1 월에 서거하고, 老中 미즈노 타다쿠니(水野忠邦)는 ‘덴포의 개혁’(天保の改革)<1841~1843>이라는 개혁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12 월 미즈노 타다쿠니는 오사카에서 통신사를 맞이하는 교섭을 추진하도록 대마도에 명했다. 이제 대마도는 오사카로 국서교환 장소를 다시 변경하는 교섭을 새롭게 하게 된 것인데, 역관과 사전 접촉 때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교섭이 쉽지 않아 보였다.¹⁸

(2) 오사카 역지통신 교섭과 ‘遷延策’

¹⁵ 田保橋潔, 앞의 책, 336 쪽.

¹⁶ 『일성록』 96 현종 7년 신축 11월 초 3일·초 4일.

¹⁷ 본고에서는 시기별로 연기를 결정한 조선의 움직임에 주목하며 통신사의 유지 또는 보존을 목적으로 파송 시기를 조율하는 것을 ‘遷延策’으로 개념화 한다.

¹⁸ 池內敏, 「未完の朝鮮通信使」,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會, 2006, 88 쪽~90 쪽.

1843년 11월에 通信使講定大差倭가 부산에 도착하고 오사카 역지통신 교섭이 시작됐다. 막부는 서계에서 1811년 통신사 빙례를 대마도에서 시행한 것은 먼 길을 오는 노고를 생각해서이지만, 도착한 즉시 접대하는 것은 禮節로 보아 두루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막부는 대마도에서 빙례하는 것보다 일본의 三都(에도, 교토, 오사카)의 하나인 오사카에서 격식을 높이고 후대하겠다는 뜻을 말한다. 이것은 대마도 역지통신에 대한 조정의 부정적인 인식에 배려한 것이다. 게다가 바다 길을 따라 오면 에도까지 육로를 이용해 가는 것보다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¹⁹ 그러나 동래부사는 규정된 차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관에게 차왜를 물리쳐 돌아가도록 지시했다. 조정은 이와 같은 조건이 오사카로 바뀌어야 할 만큼 시급한 개혁안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교섭이 진정한 것은 1844년 2월 서계문제로 문책을 받았던 현학노가 다시 훈도로 근무했을 때부터이다. 그는 1841년 11월 원주목으로 2년 정배를 당했으나, 1842년 6월 석방되었다. 1843년에는 도해역관으로 대마도에 갔다 와서 동래부 왜학 훈도로 복귀한 것이다. 현학노는 3월에 오사카 역지통신을 10년간 연기할 것을 대마도에 제안했다. 그 이유는 1846년으로 정한 역지통신이 앞으로 2년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던 현학노가 조인영을 설득했다고 다보하시 키요시(田保橋 潔)는 설명했다.²⁰ 현학노는 조인영과 상의한 후 覺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조선 측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 내용에는 조선이 잇따라 흉년을 만나서 통신사를 병오년(1846년)에 보내기 어려우니 병진년(1856년)봄으로 연기하되, 통신사의 절차 및 예단은 신미년(1811년)의 예와 조금도 차이가 없도록 한다고 되어

¹⁹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증가문서, MF0000567 『講聘參判使記錄』 天保 14년 9월~16년 1월.

²⁰ 田保橋潔, 「朝鮮國通信使易地行聘考下の2」, 343~345쪽.

있었다.²¹ 이에 대해 대마도는 10 년이 너무 길다고 하며 시기를 앞당기려고 했으나, 재정 압박에 시달린 막부는 오히려 10 년 연기를 쉽게 받아들였다. 조선의 ‘遷延策’을 일본이 수용한 것이다.

또 조선은 10 년 연기는 대마도의 요청에 응한 것이라는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대마도는 조선이 먼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면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현학노는 8 월 覺을 제출했다. 즉 오사카 역지는 귀주가 요청한 대로 大坂에서 하기로 하고 병오년 행례는 병신년 봄으로 미루어 정했다. 바라건대 어긋남이 없도록 역관으로 하여금 죄를 입는 일이 없게 할 것을 바라고 바란다고 나와 있었다.²² 이번 교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원래 왜관 교섭은 중앙의 지시를 받으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오사카 역지통신의 경우 왜학 훈도-조인영과 대마도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세도정치기라는 시대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인지 1811 년 역지통신과는 달리 막부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거나 이견이 별로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인영은 오사카 역지통신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10 년 연기를 제시했다. 즉 일본이 연기에 응한다면 조선도 오사카 역지를 허락할 수 있다는 ‘遷延策’이었다. 조인영이 통신사의 遷延을 생각한 이유는, 조정에서 수많은 일을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 파견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가 말하는 수많은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앞에서 언급한 흉년 등의 문제가 있고, 준비하고 있던 信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필자가 경제적인 측면을 먼저 지적한 이유는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서 통신사의 연기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즉 조선이 통신사를 보낸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 보다 교린이라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통신사와 차왜라는

²¹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MF0000169, 『大坂易地前集書 天保 12 년 3 월~弘化 2 년 2 월』

²²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MF0000169, 같은 책.

당시 대일외교의 2 대 현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인영은 통신사의 연기를 결단했지만, 차왜 문제에 대해서는 교린의 예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즉 당시 右議政였던 조인영이 왜관에서 귀국하지 않은 차왜를 염려하면서, 특별히 멀리에서 온 사람을 회유하는 뜻으로 접대를 허락하자고 하면서 문제해결에 나선 것이다.²³

한편 조선의 회답서계는 1845 년(憲宗 11 년) 1 월 25 일에 현학노를 통해 전달되었다. 회답서계에는 먼저 오사카로 빙례 장소를 바꾼 일은 약조와 다른 점이 있지만, 교린의 정의를 저버리기는 어렵다고 하며 교린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본이 오사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 陸路 보다 海路 이용의 편의성에 대한 언급도 있다. 즉 바다를 건너갈 때 원근이 몹시 차이가 있고, 관소에 머무르는 기간이 지연될지 헤아릴 수가 없고, 시기를 정하더라도 저절로 늦어지고 만다고 하며 긍정적인 언급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원래 정한바 병오년에 통신사를 파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곧 10 년을 연기시켜 병진년 봄에 시행한다고 명시했다.²⁴ 회답서계를 통해 오사카 역지통신의 1856 년 시행이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다.

오사카 역지통신의 시행시기가 다가오자, 대마도는 1851 년 통신사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교섭을 개시했다. 그런데 1852 년 5 월에 니시마루 성(西丸城)이 화재로 소실되자 막부는 다시 연기를 대마도에 지시했다.²⁵ 결국 1853 년 5 월에 1861 년에 시행하기로 했다.²⁶ 그러나 통신사의 축하를 받아야 할 쇼군이 1853 년 6 월에 갑자기 서거해, 12 대 쇼군에 대한 오사카 역지통신은 무산되었다. 1853 년 13 대 쇼군이 이에사다(家定)가 즉위하자 대마도는 다시 통신사 문제를 막부에 문의했고, 1856 년에 오사카 대신 대마도로 다시 변경하는 교섭에 들어갔다. 결국 13 대 쇼군을 축하하는 통신사는 5 년 연기된 1866 년

²³ 『헌종실록』 7년 3월 15일.

²⁴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MF0000169, 앞의 책.

²⁵ 「辛亥 島主出送通信使節目講定書」, 韓國史料叢書 24 『同文彙考』 4, 국사편찬위원회, 1978, 3894 쪽.

²⁶ 「癸丑 禮曹參判退定信行年期書」, 같은 책, 3895 쪽.

시행이 결정되었다. 오사카 역지통신은 시행되지도 않은 채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²⁷

‘遷延策’은 오사카 역지통신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물론 당시 위정자들이 1850 년대에 일어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遷延策’은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파송 시기를 정했기 때문에 시기가 다가오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이상 다시 ‘遷延策’으로 연기될 수 있는 兩面性도 갖고 있었다. 조선이 얻은 것은 시간과 재정적인 여유이고 무엇보다 큰 것은 통신사 외교를 존속시켰다는 점이다. 즉 통신사는 파송만 유보되고 대마도에 대한 무역이나 교섭은 변함없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대일외교에 일상에서 통신사를 존속시키려는 조선의 의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마도에 대한 지원을 계속했던 에도막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遷延策’으로 인해 延期와 쇼군의 죽음이라는 19 세기 통신사를 둘러싼 악순환 속에서 오사카 역지통신의 적절한 파송 시기를 놓친 결과가 된 것을 생각하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4. 맺음말

19 세기 통신사는 17·18 세기와는 달리 역지통신으로 추진되었다. 즉 국서교환 장소를 쇼군 거주지인 에도가 아닌 대마도 또는 오사카로 변경한 것이다. 물론 역지통신은 일본 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경제적으로 그다지 나쁘지 않는 제안이었다. 장소 변경이라는 통신사의 축소로 사행에 필요한 신삼을 비롯한 예단을 대폭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선 입장에서 장소를 꼭 바꿔야 할 명분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도 통신사는 ‘교린의 상징’인데, 그것을

²⁷ 「丙辰 島主報信使退期易地依請書」, 같은 책, 3895~3896 쪽.

축소해야 할 명분을 조선에 제시 하지 못했다. 대마도 역지통신 교섭이 20 년이란 오랜 시간을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조선은 1811 년 대마도 역지통신 교섭 때는 차왜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마도를 계속 압박했고, 오사카 역지통신의 경우 ‘遷延策’으로 시기를 조율했다. 조선 입장에서 볼 때 만족할 만한 명분을 찾을 때까지, 통신사 파송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19 세기 대마도 역지통신과 오사카 역지통신을 고찰했다. 역지통신을 제외한 일본에 대한 연구성과에 비해 통신사를 파견한 조선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며 아직 역지통신의 실상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본고는 19 세기 역지통신을 밝히기 위한 작은 시도에 불과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